



진공농축기 탱크내부 청소 중 질식

업종	식료품제조업	가해물	질소가스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생산품	스파게티 소스	재해유형	질식		물적	-

1. 재해개요

미트스파게티 소스를 생산하는 공정의 진공농축기 내부 청소작업은 질소가스를 충진하고 알칼리 용액을 투입하여 살균작업을 실시함. 이후 물을 투입하여 가열, 냉각 후 근로자가 탱크 내부에 들어가 임펠러에 묻어있는 잔유물을 닦아내는 작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음. 피재자는 이와 같은 작업순서의 오인으로 질소가스가 충진되어 있는 탱크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됨. 재해 당일 동료 근로자가 피재자와 함께 퇴근하기 위해 피재자를 찾다가 뚜껑이 열려있는 진공농축기 내부에서 사망해 있는 피재자를 발견함.



2. 재해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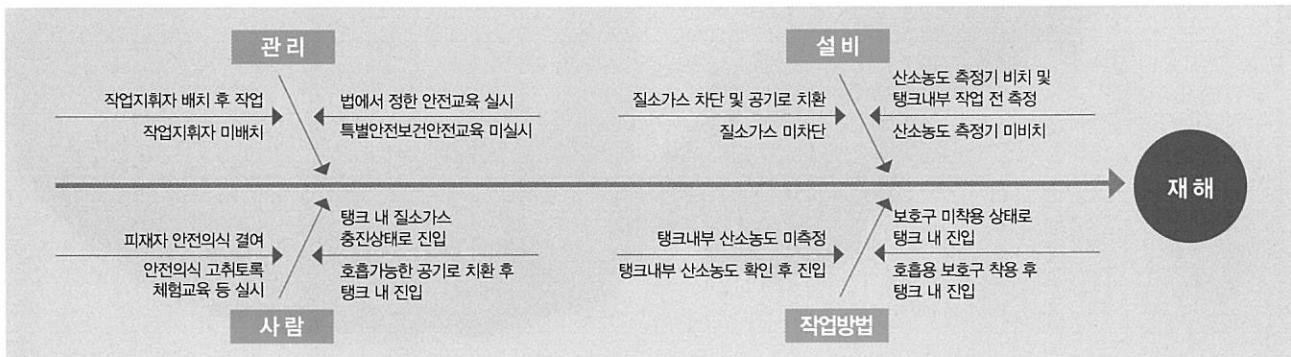
- ① 질소가스가 충진되어 있는 탱크 내부에 들어감
- ② 질소가스 차단 미실시 및 보호구 미착용
- ③ 산소농도 미확인 상태로 탱크 내부로 들어감
- ④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
- ⑤ 안전교육 미실시
- ⑥ 관리감독 소홀

3. 예방대책

- ❶ 질소가스 차단 및 호흡가능한 공기로 치환
- ❷ 탱크 내부 산소농도 측정(18% 이상인지 확인)
- ❸ 호흡용 보호구 착용 등 밀폐공간 작업안전수칙 준수
- ❹ 작업지휘자 배치 후 작업
- ❺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❻ 관리감독 철저

4. 법 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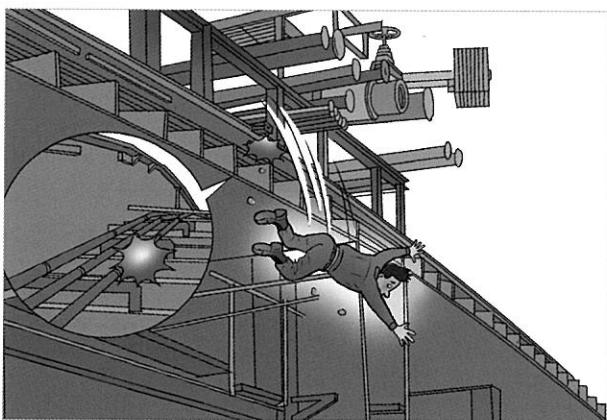


선박 Upper Deck 상부 이동 중 추락

업종	선박 건조수리업	가해물	바닥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생산품	선박 배관설치	재해유형	추락	물적		-

1. 재해개요

선박 Upper Deck 상부에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장에서 점심식사 이후 작업장을 통로삼아 이동하던 피해자는 안전난간이 없는 부분에서 실족하여 4.5m 정도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함. 동료 근로자가 이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함.



2. 재해원인

- ① 안전난간 미설치
- ② 안전대 사용시설 미설치
- ③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미착용
- ④ 지정된 통로 미사용
- ⑤ 안전의식 결여
- ⑥ 관리감독 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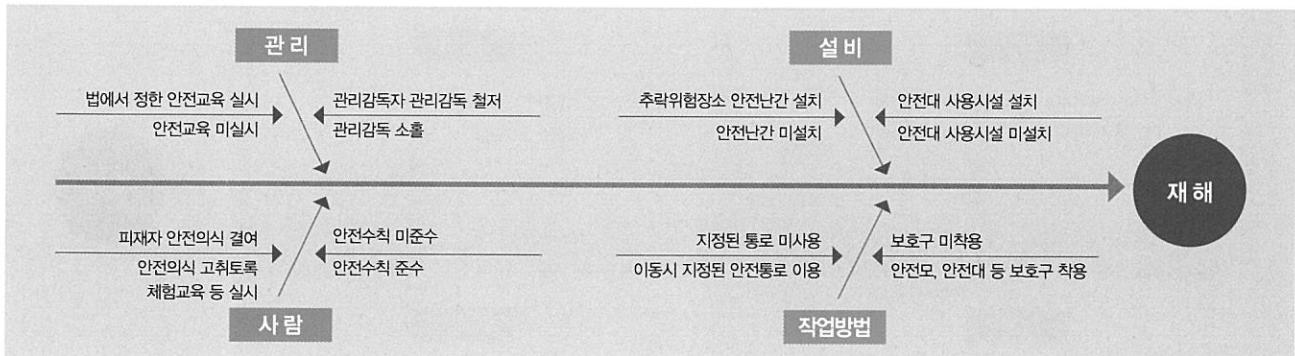
3. 예방대책

- ①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 ② 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사용시설 설치
- ③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 ④ 지정된 통로로 이동
- ⑤ 안전의식 고취토록 체험교육 등 실시
- ⑥ 관리감독 철저

4. 법 위반사항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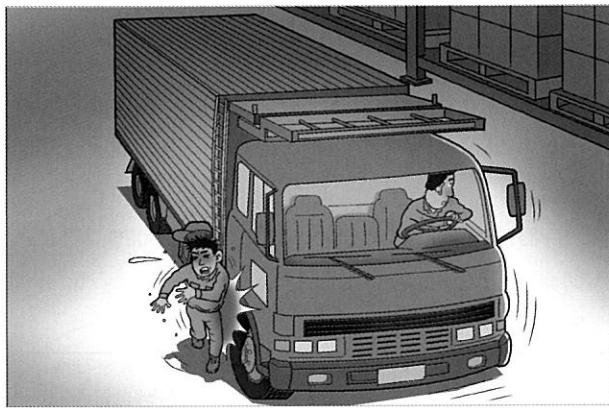


후진하는 화물차량 앞바퀴에 협착

업종	운수서비스업	가해물	화물차 앞바퀴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생산품	기내식 탑재	재해유형	협착	물적		-

1. 재해개요

저녁 무렵 화물차량에 기내식 탑재원(피재자)과 운전자가 탑승하고 작업장소에 진입함. 기내식을 탑재를 위한 Dock에 후진 접견하기 위해 탑재원이 하차 후 운전자는 유도자의 안내를 무시한 채 후방에 주의를 집중하며 후진 접견한 후 전방을 보니 먼저 하차했던 탑재원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함. 피재자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치료 도중 사망함.



2. 재해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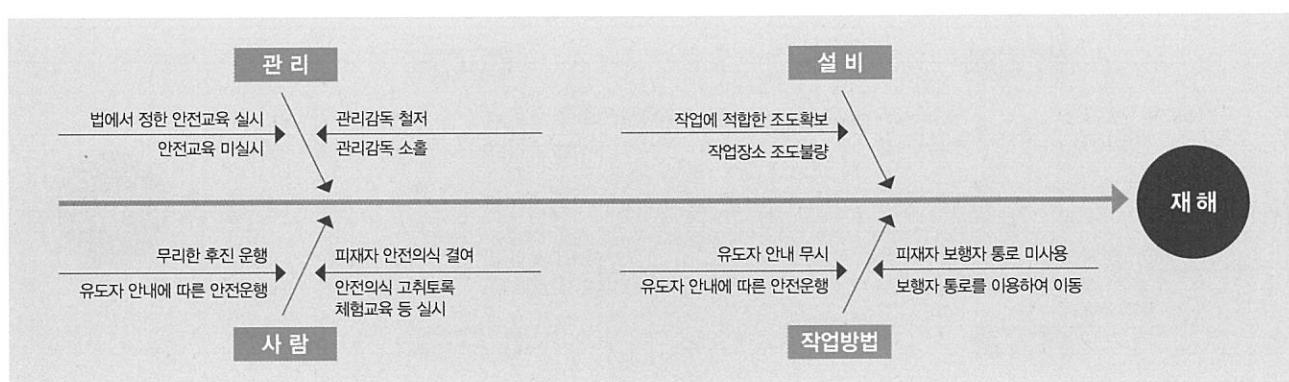
- ① 유도자의 안내를 무시한 무리한 후진 운행
- ② 운전자의 운전부주의
- ③ Dock 작업장소의 조도 불량
- ④ 피재자의 지정통로 미사용
- ⑤ 안전교육 미실시
- ⑥ 관리감독 소홀

3. 예방대책

- ① 유도자의 안내에 따른 안전한 후진운행 실시
- ② 조도가 불량한 장소에서는 주의 운행
- ③ Dock 작업장소 적정조도 확보
- ④ 보행자는 지정통로 이용
- ⑤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실시
- ⑥ 관리감독자 관리감독 철저

4. 법 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나.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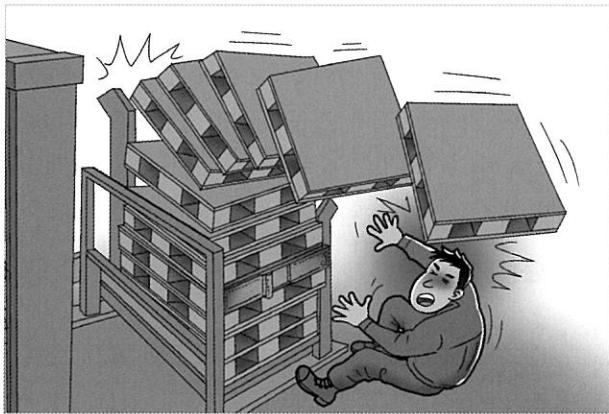


팔레트 적재대에서 팔레트 낙하

업종	식료품제조업	가해물	팔레트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생산품	된장, 고추장	재해유형	낙하, 협착	물적	-	

1. 재해개요

된장 출고작업장 팔레트 타이저(팔레트 자동이송 설비)에서 정상적으로 팔레트가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조치하기 위해 팔레트 적재위치로 다가가 물리적으로 팔레트를 움직이자 설비가 작동하며, 상단 부분에 적재되어 있던 팔레트(110cm × 110cm × 150cm, 30kg)들이 피해자의 머리위로 연속적으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사망함.



2. 재해원인

- ① 비정상작업시 전원 미차단
- ② 설비 이상에 대한 임의조치 실시
- ③ 위험구역 내 접근
- ④ 적재대 상단 팔레트의 적재상태 미확인 상태로 물리적 조치 실시
- ⑤ 피해자의 안전의식 결여
- ⑥ 관리감독 소홀

3. 예방대책

- ① 비정상작업 시 전원 차단실시 및 설비의 정지상태 확인 후 작업
- ② 설비 이상에 대한 오퍼레이터의 임의조치 금지
- ③ 위험구역내 접근 불가도록 보호율 설치
- ④ 조치 전 주변상황 파악 및 안전확보
- ⑤ 안전의식 고취토록 체험교육 등 실시
- ⑥ 관리감독자 관리감독 철저

4. 법 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나.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